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20-203호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고시

1. 건설부고시 제1990-697호(1990.10.18)로 지구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2-337호(1992.10.21) 및 은평구고시 제1995-60호(1995.12.27)로 주거환경개선 계획 수립된 불광·녹번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 계획을 변경(사업 기간 연장)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주거재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2월 24일

은 평 구 청 장

가. 개선계획변경수립 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지 구 명	위 치	면적(m ²)	비 고
불광주거환경개선지구	은평구 불광동 630번지 일대	24,776	
녹번주거환경개선지구	은평구 녹번동 1번지 일대	30,937	

나. 사업시행기간

지 구 명	사 업 시 행 기 간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불광지구	'92. 10. 21 ~ '20. 12. 31	'92. 10. 21 ~ '21. 12. 31	1년 연장
녹번지구	'92. 10. 21 ~ '20. 12. 31	'92. 10. 21 ~ '21. 12. 31	1년 연장

다. 사업시행자 : 은평구청장

라. 주거환경개선계획의 변경수립 내용

- 건축물 개량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시행기간 연장(1년 연장)
- 토지이용계획, 공공시설정비계획, 건축물개량계획, 도시계획사항(변경없음)

마.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주거재생과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공 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0 - 172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에 따라 민원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에 규정되어있는 위원회와의 통일성 제고를 위한 위원회 명칭 변경(제명)
- 나. 위원회 목적 및 기능(안 제1조~제2조)
- 다. 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 라. 위원의 임기 및 해촉(안 제4조)
- 마.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 규정(안 제4조의 2)
- 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및 서면 심의 사항 추가(안 제6조)
- 사. 간사를 민원조정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변경(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참조 : 감사담당관, 전화 : 02-351-6066, FAX : 02-351-5613 또는 E-mail : snumgo@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이 조례제정안은 법제심사, 의회심의 및 상급기관 검토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나.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 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은평구 홈페이지(<http://www.ep.go.kr>) ‘입법예고’에 입법안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견 서

☐ 조례(안)명 :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제출자	2020. 감사담당관
--------------	----------------

1. 제안이유

- 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나.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고질민원, 특이민원 등 민원 해소 및 방지 대책 마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와의 통일성 제고를 위한 위원회 명칭 변경(제명)
- 1) 민원심의위원회를 민원조정위원회로 변경
- 나. 위원회 목적 및 기능(안 제1조~제2조)
- 1)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 명시 및 위원회 명칭 변경
 - 2)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령에 따른 사항으로 개정
- 다. 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 1) 위원장은 해당 민원의 소관 국장으로 변경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함.
 - 2) 위원은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담당관, 외부 법률전문가,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라. 위원의 임기 및 해촉(안 제4조)
- 1) 위촉직 위원의 임기 2년, 한 차례 연임 가능 규정
 - 2) 사유발생 시 위원의 해촉 조항 추가
- 마.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 규정(안 제4조의 2)
- 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및 서면 심의 사항 추가(안 제6조)

사. 간사를 민원조정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변경(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2.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3.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4.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그 기관의 장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이하 "민원조정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③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그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국장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원 중에서 지명하고, 위원은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된 복합민원을 심의·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 기관의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민원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기획예산과 기획팀 (위원회 담당) 합의 완료

라. 기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20. 12. 24. ~ 2021. 1. 13.

3)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평가 결과 : 개선사항 없음(가족정책과-30697호, 2020. 12. 18.)

5)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이상없음(감사담당관-13056호, 2020. 12. 18.)

작성자 : 감사담당관 민원순찰팀 박순희 (전화 351-6066)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은평구(이하 “구”라 한다)”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로, “구에 민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조정위원회”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능) ①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항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38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해당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는 민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의 제목 “(구성)”을 “(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 ② 위원장은 해당 민원의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를 지정하는 경우 또는

민원사안이 2개국 이상과 관련되는 경우 등 사안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담당관, 외부 법률전문가,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인 경우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장기불참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각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며,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중전의 제7조)제2항 중 “**위원 3인 이상의**”를 “**재적위원 과반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을 “**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장은 신속한 안건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서면으로 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8조(중전의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민원

조정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중전의 제10조)제1항 중 “은평구”를 “구”로, “들어야 한다”를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은평구”를 “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서울특별시 은평구</u> <u>민원심의위원회 조례</u> 제1조(목적) <u>이 조례는 서울특별</u> <u>시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u> <u>구정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u> <u>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u> <u>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기</u> <u>위하여 구에 민원심의위원회(이</u> <u>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제2조(기능) <u>위원회는 다음의 사</u> <u>항을 관장한다.</u> 1. <u>정당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u> <u>리방안 제시 또는 시정건의</u> 2. <u>부당하거나 무리한 민원사항</u> <u>에 대한 민원인의 설득</u> 3. <u>기타 민원사무에 관련된 제</u> <u>도의 개선 건의</u>	<u>서울특별시 은평구</u> <u>민원조정위원회 조례</u> 제1조(목적) 「<u>민원 처리에 관한</u> <u>법률</u>」 제34조에 따라 <u>서울특별</u> <u>시 은평구</u>----- ----- ----- ---- <u>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u> <u>조정위원회</u>-----. 제2조(기능) ①<u>서울특별시 은평구</u> <u>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u> <u>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u> <u>을 심의 · 조정한다.</u> 1. 「<u>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u>」 (이하 “<u>법</u>”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에 따른 사항 2. 「<u>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u> <u>행령</u>」(이하 “<u>영</u>”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항 ②<u>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u> <u>영 제38조제2항 각 호의 사항</u> <u>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해당위</u> <u>원회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는</u> <u>민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u>

제3조(구성) ① (생략)

②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노동계, 경제계, 문화계, 여성계, 기타 민원사항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민원인이 자기가 제출한 민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주기를 희망한 때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외에 그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해당 민원의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를 지정하는 경우 또는 민원사안이 2개국 이상과 관련되는 경우 등 사안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담당관, 외부 법률전문가, 민원 관련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삭제>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위원의 임기는 제3조제5항에 따른 민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삭 제>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인 경우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장기불참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에서 제척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각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생략)

제6조(회의의 구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민원사항에 따라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시마다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
여 위촉된 위원 중에서 민원사
항에 따른 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의 소집 등) ① (생략)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인 이
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을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생략)

<신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
----- 총괄한다.

② (현행과 같음)

<삭제>

제6조(회의의 소집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재적위원 과
반수 -----

--.

③ -----

-- 위원 -----
-----.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장은 신속한 안전처리가

제8조 (생 략)

제9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감사담당관
이 되고, 서기는 민원조사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의견청취 및 조사) ①위원
회는 민원인과 민원사항과 관련
된 은평구 소속 국장 또는 과장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민원사
항과 관련된 은평구 소관의 서
류를 열람,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 (생 략)

<신 설>

필요할 때에는 서면으로 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7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
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민원조정 관련 업무 담
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의견청취 및 조사) ①----

 -- 구 -----

----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
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구 -----
 -----.

제10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0 - 172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일부를 개정하여 계약심사 제외사업 금액 일부를 축소하여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약심사 대상사업 관련 법령 조문 수정 및 추가(안 제3조)

나. 계약심사 제외사업 금액 축소하여 심사대상 사업 확대(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 전화 : 02-351-6072, FAX : 02-351-5613 또는 E-mail : eos3507@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가. 이 조례제정안은 법제심사, 의회심의 및 상급기관 검토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 나.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 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은평구 홈페이지(<http://www.ep.go.kr>) ‘입법예고’에 입법안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견 서

☐ 규칙(안)명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	--

제출년월일	2020
제 출 자	감 사 담 당 관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일부를 개정하여 계약심사 제외사업 금액 일부를 축소하여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약심사 대상사업 관련 법령 조문 수정 및 추가(안 제3조)

나. 계약심사 제외사업 금액 축소하여 심사대상 사업 확대(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처리 규칙」 (일부개정 2019. 10. 10.)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자치구의 대상사업은 시비 재배정사업과 국비·시비보조사업으로 제한한다. <개정 2012. 5. 31., 2014. 11. 6., 2017. 1. 19., 2018. 1. 18., 2019. 10. 1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기술용역: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건축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 「주택법」 제43조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 나.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다. 일반용역: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물품의 제조·구매
 4.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업
 5.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1회 증액분 또는 2회 이후 누적 증액분이 당해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인 설계변경 공사
 6.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행사업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합의 완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2) 입법예고 : 2020. 12. 24. ~ 2021. 1. 13.
- 3)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결과: 이상없음(감사담당관-13006호, 2020. 12. 17.)
- 5) 성별영향평가 결과: 작성제외법령(가족정책과-30625호, 2020. 12. 17.)

작성자: 감사담당관 일상감사팀 성현주 (전화 6072)

서울특별시 은평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전기공사업법**」”을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기술용역: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 「**건축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 「**주택법**」 제43조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제4조제3호가목 중 “**3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1. ----- -----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 -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
라. (생략)	라. (현행과 같음)
마.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2. -----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건설 기술용역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 등 건설공사 및 엔지니어	나. 기술용역: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 「건축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

링 활동과 관련된 용역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2. (생략)

3. 추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3천만원 미만의 공사

나. 2천만원 미만의 용역

다. 2. 라. (생략)

법」 제2조제5호,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 「주택법」 제43조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

-----.

1. 2. (현행과 같음)

3. -----

가. 2천만원 -----

나. 1천만원 -----

다. 2. 라.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 2020 - 1723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사랑상품권 이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1. 제안이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0. 7. 2.자로 시행됨에 따라 이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은평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함(안 제1조~제2조)
- 나. 은평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유통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다. 판매대행점의 협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라. 가맹점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마. 가맹점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바. 은평사랑상품권 잔액의 환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사. 은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아. 은평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참조 : 일자리경제과, 전화 : 02-351-6833, FAX : 02-351-5648 또는 E-mail : comet@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은평구 홈페이지(<http://www.ep.go.kr>) '공고.고시'에 입법안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안)명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변 호	

제출연월일	2020년 월 일
제 출 자	은평구청장

1. 제안이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0. 7. 2. 자로 시행됨에 따라 이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은평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함(안 제1조~제2조)
- 나. 은평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유통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다. 판매대행점의 협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라. 가맹점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마. 가맹점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바. 은평사랑상품권 잔액의 환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사. 은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아. 은평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조(지역사랑상품권 잔액의 환급)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3)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1조(재정지원의 조건)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자치구를 지원을 할 때에 제9조 제3항에 따른 조치 및 제8조에 따른 공동 운영대행사 이용 등을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021회계연도 본예산에 반영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20. 12. 24. ~ 2021. 1. 13.(예정)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성별영향평가 결과 : 이상없음(가족정책과-30528, 2020. 12. 17.)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이상없음(감사담당관-12995, 2020. 12. 17.)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팀 황혜성 (전화 6833)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은평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은평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은평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은평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4항에 따라 상품권의 종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하고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만원
2. 5만원

3. 10만원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외의 종류를 보조적으로 활용하거나 권면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품권의 명칭

2. 권면금액

3. 유효기간

4. 그 밖에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다만, 법 제4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맺어 구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유통지역으로 할 수 있다.

제4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이 상품권의 판매, 환전 등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기간

2. 비밀유지, 개인정보 보호 등 의무 이행 사항

3. 사업비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③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은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의 업무 실적을 매월 말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다만, 상품권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산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을 영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맹점으로 등록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복권업종을 영위하는 자일 것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이 아닌 다른 업종을 함께 영위하고 있을 것
3. 제2호에 따른 업종의 연평균 매출액이 제1호에 따른 복권업종의 연평균 매출액보다 클 것

③ 법 제7조제2항제3호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제6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7조(상품권 잔액의 환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3조에 따라 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상품권 구매 시 할인받은 비율만큼의 금액은 제외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의 경우 잔액 환급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상품권 이용 활성화 정책) ① 구청장은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 이내를 말한다. 다만 재난 발생 및 대량실업 등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하거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품권 유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3. 상품권 추가 지급 등 유인책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상품권의 발행·유통 등 운영에 관한 사무
2. 상품권의 발행·유통 전산 시스템의 운영·유지·보수에 관한 사무

3. 가맹점 등록 등에 관한 업무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